

법령자료

새 법령(법률 제9138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
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경한

법률 제9138호

公證人法 일부개정법률

公證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公證人法”을 “공증인법”으로 한다.
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증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변호사가 행하고 있으며, 임명공증인은 해석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변호사가 공증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명공증인과 변호사 모두 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양자를 동일하게 규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국회 통과 법률

公證人法 일부개정법률

※편집자 주 : 정부가 2008년 11월 28일 의안 번호 제2392호로 국회에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개정법률의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 제안이유와 내용, 국회 법사위의 수정이유와 내용,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과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합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이 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안 제1조의 2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 (1) 현재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포함시켜 법무법인등이 공증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 (3) 이와 같이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 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안 제12조,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나 고령(高齡)인 사람도 공증인으로서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2)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공증인으로 공증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령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1) 현재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공증사무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여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15조의10 및 제77조의8 신설)

(1) 현재 공증사무의 처리능력과 이해

도가 부족한 공증인이 존재하고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저해되고 있음.

(2)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증인의 공증사무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높아져 적절한 공증사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공증서류 보존제도의 개선(안 제24조, 안 제77조의9 신설)

(1) 공증서류 보존시설의 설치·임차비용 등이 증가되어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된 경우 공증서류의 인수·인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증서류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공증인협회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서류 통합보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민불편법령의 정비(안 제33조제3

항)

- (1) 현재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그 친족이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2)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 (3)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친족이 공증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선서인증제도의 도입(안 제57조의2, 제66조의5 및 제89조 신설)

- (1) 외국의 기관이나 기업이 선서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제도가 없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2)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하며, 허위 선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선서인증에 의해 사서증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어 증서내용에 대한 분쟁 해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현행 제62조 삭제)

- (1) 현재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본점 인근 지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이 다르면 이용할 수 없어 법인 설립 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 (3) 이와 같이 정관 인증에 관한 사무의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여 창업 과정에서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안 제5장의2 신설)

- (1)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의 제정(법률 제8582호, 2007. 8. 3. 공포, 2008. 4. 1. 시행)으로 회사 등기의 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을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2)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자공증을 수행할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촉탁인의 청

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 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 등도 보존하도록 함.

- (3)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가입 단체화 및 명칭변경 등(안 제6장의2)

- (1) 현재 대한공증협회는 임의가입 단체로 되어 있어 전체 공증인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법무부의 전적인 관리·감독권 행사는 인원 부족 및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대한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하며,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3)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공증인 징계제도의 개선(안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 및 제86조, 안 제84조의2,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 (1) 현재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하나인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 현실에 맞지 않고, 직무정지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2) 현재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3) 이와 같이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증인의 징계 및 직무정지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이유

선서인증의 존재나 효력유무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선서의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허위선서 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법정에서 과거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89조를 삭제하며, 그 밖에 일부 자구 등리 정리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선서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언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하도록 하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제4항 및 제5항).

나. 허위 선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9조 삭제).

■ 국회 통과 법률안의 최종 내용 ■

법률 제 호

公證人法 일부개정법률

公證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公證人法”을 “공증인법”으로 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증인의 임명·인가 등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

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

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증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

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 등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

큰 정관의 인증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① 임명 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 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4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6조의2

부터 제56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併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

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제40조(부속 서류의 연결)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결(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결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

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초록 정본)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

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

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결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

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⑥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 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의2를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법인 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2(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 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

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

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6장(제67조부터 제7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 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대리공증

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3조(검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검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4조(검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검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검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검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2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6(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 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86조의3 다음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양벌 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

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務法人과 公證認可 合同法律事務所의 당해 業務執行辯護士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법률
<u>公證人法</u>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法은公證人의地位와그 <u>公證事務處理를適切히規律하여公證 人制度를確立함을目的으로한다.</u> <신설>	<u>공증인법</u>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u>공증인(公證人)</u> 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 율하여 <u>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u> <u>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u>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u> <u>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u> <u>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u> <u>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u> <u>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u> <u>(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u> <u>말한다.</u> 2.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u>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u>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 <u>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u> <u>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u> <u>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u> <u>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u>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 <u>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u>

第2條(公證人の職務) 公證人は當事者
其他關係人の囑託에依하여法律行爲
其他 私權에 관한 事實에對한公正證
書의作成, 私署證書에對한認證과 이
法 및 기타의 法令이 정하는 公證人の
事務를 처리함을 그職務로한다.

第3條(文書の公正力の要件) 公證人이
作成하는文書는이法其他의法律이定
하는要件을具備하지아니하면公正의
效力을가지지아니한다.

第4條(囑託引受義務) ①公證人は正當
한理由없이囑託을拒絶하지못한다.

②公證人이囑託을拒絶하는境遇에는
囑託人또는그代理人에게拒絶의理由
를告하여야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
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
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
를 말한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
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
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
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
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
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
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
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
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
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
를 알려야 한다.

第5條(事件의漏泄禁止) 公證人은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그取扱한事件을漏泄하지못한다. 다만, 囑託人의同意를얻은때에는例外로한다.

第6條(兼職禁止) 公證人은다른公務를兼하거나商業을經營하거나또는商事會社나營利를目的으로하는社團法人의代表者나使用人이될수없다. 다만, 法務部長官의許可를얻은때에는例外로한다.

第7條(手數料, 日當, 旅費) ①公證人은 囑託人으로부터手數料, 日當과旅費를받는다.

<신 설>

<신 설>

②公證人은第1項에記載한것을除外하고는如何한名義로도그取扱한事件에關하여報酬를받지 못한다.

③第1項의手數料, 日當과旅費에關한事項은法務部令으로써定한다.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 그의 송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第8條(公證事務의代行) 地方檢察廳의 管轄區域內에公證人이없는境遇또는 公證人이그職務를遂行할수없는境遇에는法務部長官은地方檢察廳檢事또는地方法院登記所長으로하여금管轄區域內에서公證人의職務를行하게할 수있다.

第9條(公證人의職務에關한規定의準用) 이法其他法令中公證人의職務에關한規定은第8條에依하여公證人의事務를取扱하는檢事또는地方法院登記所長에게이를準用한다. 다만, 第7條에依한手數料, 日當과旅費는國庫의收入으로한다.

第2章 任免과所屬

第10條(公證人의所屬과定員) ①公證人은地方檢察廳의所屬으로한다.

②各地方檢察廳所屬公證人의定員數는地方檢察廳의管轄區域마다法務部長官이이를定한다. <후단 신설>

第11條(公證人의任命) 公證人은法務部長官이任命하고그所屬地方檢察廳을指定한다.

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2장 공증인의 임명·인가 등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第12條(資格) 公證人에 任命될 수 있는
者는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
을 가진 者로 한다.

第13條(公證人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證人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
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
猶豫의 期間이 종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
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7.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 또
는 免職의 處分을 받거나 辯護士法
에 의하여 除名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8.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신 설>

한다.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
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
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
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
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

第14條(公證人의免職) ①法務部長官은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事由가있을때에는公證人을免職시킬수있다.

1. 公證人이辭任을願하는때

<신 설>

2. 公證人이期間內에身元保證金또는 그補充額을納付하지아니할때

3. 公證人이身體또는精神의衰弱으로職務를執行할수없게된 때

②第1項第3號의境遇에는懲戒委員會의議決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15條(任期와當然退職) ①公證人의任期는 5年으로 하되 再任命할 수 있다. 다만, 再任命할 때마다 그任期는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추어야 한다.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

<신 설>

<신 설>

③公證人이 第13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退職된다.

<신 설>

<신 설>

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

<신 설>

<신 설>

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 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신 설> <신 설>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職務執行에關한通則 第16條(職務執行區域) 公證人の職務執行區域은 그所屬地方檢察廳의管轄區域에依한다. <단서 신설> 第17條(事務所) ①公證人이事務所를設置또는移轉하려고할때에는法務部長官의認可를얻어야한다. ② 삭 제 ③合同事務所の設置 및 運營 기타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公證人은그事務所에서職務를行하여야한다. 다만, 事件의性質上事務所에서職務를行할수없을때또는法令에다른規定이있을때에는例外로한다.

<신 설>

第18條(身元保證金の納付) ①公證人은 任命狀을 받은날로부터15日以內에所屬地方檢察廳에 身元保證金を納付하여야한다.

②身元保證金の額은區域의狀況에따라法務部令으로써定한다.

③第1項에依하여納付한金額이第2項에依하여決定된金額에未達하여補充의命令을받은때에는그命令을받은날로부터30日以內에그不足額을補充하여야한다.

④公證人은 身元保證金を 납부할 때까지는 그 職務를 行할 수 없다.

第19條(身元保證金還付) ①身元保證金を還付하는境遇에는그身元保證金에對한權利를가진者에對하여6月以內에申請할것을公告하여야한다.

②身元保證金은第1項의期間을經過하지아니하면이를還付하지아니한다.

③身元保證金은다른公課金또는債權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채

에優先하여第1項의公告費用에充當한다.

第20條(署名·職印의 申告) ①公證人은 그 職務를 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署名과 職印의 印影을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公證人이 申告한 署名을 變更하거나 職印을 改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21條(公證人의 除斥) 公證人은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때에는그職務를行할 수 없다.

1. 囑託人, 그代理人또는囑託받은事項에關하여利害關係를가지는者の 배우자 또는친족인 때, 親族關係가 끝난때도또한 같다.
2. 囑託人또는그代理人의法定代理人인 때
3. 囑託받은事項에關하여利害關係가 있을 때
4. 囑託받은사항에관한代理人이나補助人인 때또는代理人이나補助人이 있을 때

第22條(署名時의記載事項) 公證人이職務上署名할 때에는그職名·所屬과事

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비용에 充當한다.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事務所所在地를記載하여야한다.

第23條(公證人補助者) ①公證人은 補助者를 두고 그 職務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者를 두고자 하는 公證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補助者의 交替·解雇 또는 死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4條(書類의持出禁止, 保存) ①公證人이作成한證書의原本과그附屬書類 第63條第3項의規定에依하여公證人이保存하는定款과그 附屬書類, 其他法令에依하여公證人이作成한帳簿는 災難을避하기爲하여不得已한境遇와 檢察廳의命令이있는境遇가아니면이를事務所밖으로持出할수없다.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4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신 설>

②第1項의書類의保存과廢棄에 關한事項은法務部長官이定한다.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第4章 證書의作成

第25條(證書를作成할수없는境遇) 公證人은法令에違反한事項, 無効인法律行爲와無能力으로因하여取消할수있는法律行爲에關하여證書를작성할수없다.

第26條(使用語) ①公證人이 작성하는證書에는 國語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囑託人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外國語를 併記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경우 國語와 이에 併記한 外國語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國語로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第27條(囑託人의確認) ①公證人이證書를作成하기爲하여는囑託人의姓名을 알고또한이와面識이있어야한다.

②公證人이囑託人의姓名을모르거나 또는그와面識이없을때에는 住民登錄證 기타 權限있는 行政機關이 발행한 寫眞이 첨부된 證明書を 제출하게 하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併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

거나 公證人이姓名을알고面識도있는 證人2人으로하여금그囑託人이相違없음을證明하게하거나其他 이에準하는 確實한方法에依하여相違없음을 證明시켜야한다.다만, 囑託人이 外國國籍者인 경우에는 旅券 또는 大韓民國에 駐在하는 당해 外國國籍者의 本國의 領事가 발행한 證明書로써 相違없음을 증명시킬 수 있다.

③急迫한 事由로 因하여 公證人이 證書를 作成하는 때에는 證書를 作成한 後 3日以內에 證書의 作成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第2項의 節次를 取할 수 있다.

④第3項의 節次를 밟은 때에는 그 證書는 急迫한 事由로 因하여 作成된 것이 아니라는 理由로 그 效力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第28條(通譯人의使用) 囑託人이國語를 解得하지 못하는境遇또는聾者, 啞者其他言語를發言하지 못하는者로서文字도解得하지 못하는境遇에公證人이證書를作成하기爲하여는通譯人을使用하여야한다.

第29條(參與人의參與) ①囑託人이盲者인境遇또는文字를解得하지 못하는境遇에公證人이證書를作成할 때에는參與人을參與하게하여야한다.

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規定은囑託人이參與人을參與시킬것을請求한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30條(代理囑託) 代理人에依하여囑託되었을境遇에는第27條 내지第29條의規定은그代理人에게이를準用한다.

第31條(代理權의증명) ①代理人의囑託으로公證人證書를作成할 때에는代理權을立證할證書를提出하게하여야한다.

②第1項의證書가認證을받지아니한私署證書인 때에는그證書外에權限있는行政機關이 作成한印鑑證明書또는署名에關한證明書를提出하게하여證書가眞正한것임을證明하게하여야한다.

③證書의作成에關한規定에依하여代理또는그方式의欠缺을追完하였을 때에는그證書는欠缺이있었다는理由로效力이妨害되지아니한다.

第32條(許諾, 同意를要하는法律行爲의公證) ①第3者의許諾이나同意를要하는法律行爲에關하여公證人이證書를作成할 때에는그許諾이나同意가있었음을立證할證書를提出하게하여야한다.

②第31條第2項과第3項의規定은第1項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33條(通譯人, 參與人의選定과資格)

①通譯人과參與人은囑託이나또는그代理人이이를選定하여야한다.

②參與人은通譯人을兼할수있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32조(허락·동의를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 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各號의 1에該當하는者는參與人이될수없다. 다만, 第29條第2項의 境遇에는例外로한다.

1. 未成年者

<신 설>

3. 署名할수없는者

4. 囑託事項에關하여利害關係있는者

5. 囑託事項에關하여代理人또는補助人이나代理人또는補助人이었던者

6. 公證人이나囑託人또는그代理人의配偶者, 친족, 法定代理人, 被用者또는同居人

7. 公證人の補助者

第34條(證書의 內容) 公證人이證書를作成함에는그聽取한陳述, 그目睹한事實其他實驗한事實을記錄하고또한그實驗の方法을記載하여야한다.

第35條(記載事項) 公證人이作成하는證書에는그內容以外에다음各號의事項을記載하여야한다.

1. 證書의番號

2. 囑託人の住所, 職業, 姓名과年齡, 法人인때에는그名稱과事務所所在地

3. 代理人에依하여囑託되었을때에는그事由의代理權을證明할證書를提出시킨事實과그代理人의住所, 職業, 姓名과年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기제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4.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의 姓名을 알고 있고 또한 이와 面識이 있을 때에는 그 事實
 5. 第3者의 許諾이나 同意있음을 證明하는 證書를 提出시켰을 때에는 그 事由와 그 第3者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所在地
 6. 第27條第2項에 依한 證明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 證人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또는 그 確認의 方法
 7. 第27條第3項의 境遇에는 그 事由
 8. 第31條第2項에 依한 證明이 있었을 때에는 그 事由
 9. 通譯人이나 參與人을 參與시켰을 때에는 그 事由와 通譯人 또는 參與人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10. 作成의 年月日과 場所
- 第35條의2(附記) ① 公證人은 公正證書에 기재된 當事者 雙方 또는 그 代理人의 촉탁에 의하여 債務의 全部辨濟나 契約의 全部解消事實을 證書의 原本에 附記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記를 함에 있어서는 그 年月日を 明記하고 囑託人과 公證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③ 第27條 내지 第32條와 第36條 내지 第38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36條(證書作成方法) ① 公證人이 證書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를作成할때에는普通平易한用語를使用하고字劃을明白하게하여야한다.

②接續하여야할字行에空白이있는데는直線 또는斜線으로된墨線으로이를接續케하여야한다.

第37條(文字의變改, 挿入, 削除) ①證書의文字는이를變改할수없다.

②證書에文字를挿入할때에는그字數와位置를欄外나末尾의餘白에記載하고公證人, 囑託人또는그代理人과參與人이이에捺印하여야한다.

③證書의文字를削除하는때에는그文字는明白히읽을수있도록字體를남겨두고削除한字數와位置를欄外나末尾의餘白에記載하고公證人, 囑託人또는그代理人과參與人이이에捺印하여야한다.

④第1項내지第3項의規定에違反한訂正은效力이없다.

第38條(證書作成節次) ①公證人은그가作成한證書를列席者에게읽어주거나 또는閱覽시켜囑託人또는그代理人의承認을얻어그趣旨를證書에記載하여야한다.

②通譯人을參與시켰을境遇에는第1項外에通譯人으로하여금證書의趣旨를通譯시키고그趣旨를證書에記載하여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記載를한때에는公證人과列席者는各自證書에署名

증서를작성할때에는보통의쉬운용어를사용하고글자획을명확하게써야한다.

②글자가연결되어야할자행(字行)에빈공간이있을때에는직선또는사선을그어그부분에다른글자가없음을표시하여야한다.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①증서의글자는수정할수없다.

②증서에글자를삽입할때에는삽입한글자수와그위치를칸의밖이나끝부분여백에적고공증인, 촉탁인 또는그대리인과참여인이이에날인하여야한다.

③증서의글자를삭제할때에는그글자를명확히읽을수있도록글자의모양은남겨두고삭제한글자수와그위치를칸의밖이나끝부분여백에적고공증인, 촉탁인 또는그대리인과참여인이이에날인하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를위반한정정(訂正)은효력이없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공증인은그가작성한증서를모든참석자에게읽어주거나열람하게하여촉탁인또는그대리인의의의가없음을확인하고그취지를증서에적어야한다.

②통역인을참여시켰을경우에는제1항의절차외에통역인에게증서의취지를통역하게하고그취지를증서에적어야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따라각각의취지를적으면공증인과참석자는각자

捺印하여야 한다.

④ 列席者로서 署名할 수 없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事由를 證書에 記載하고 公證人과 參與人이 이에 捺印하여야 한다.

⑤ 證書가 數枚에 걸치는 때에는 公證人은 每紙面의 綴目에 間印을 하여야 한다.

第39條(書面의引用) ① 公證人이 作成하는 證書에 他書面을 引用하고 이를 그證書에 添附하는 때에는 公證人은 그證書와 添附書面과의 綴目에 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 第36條 내지 第38條의 規定은 第1項의 添附書面에 準用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依한 添附書面은 公證人이 作成한 證書의 一部로 看做한다.

第40條(附屬書類의連綴) ① 代理權을 證明하는 證書, 權限 있는 行政機關이 발행한 證明書, 第3者의 許諾이나 同意를 證明하는 證書 其他의 附屬書類는 公證人이 作成한 證書에 이를 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囑託人이 附屬書類의 原本의 還付를 請求한 境遇에는 그謄本을 原本에 代身하여 連綴할 수 있다.

② 公證人은 證書와 그附屬書類와의 綴目과 附屬書類 相互의 綴目에 間印을 하여야 한다.

第41條(原本滅失의境遇) ① 證書의 原本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증서와 첨부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각호의 부속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밖의 부속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부속서류 간 및 부속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이 滅失한境遇에는 公證人은 이미 交付한證書의正本이나 謄本을 回收하여 所屬地方檢察廳 檢事長의 認可를 받아 滅失한證書에 대신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證書에는 所屬地方檢察廳 檢事長의 認可를 받아 滅失한證書에 대신하여 이를 保存한다는 趣旨와 認可의年月日을 記載하고 公證人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2條(印紙의貼付) 公證人은 囑託人으로 하여 금印紙稅法에 의하여 證書의原本에 印紙를 貼用케 하여야 한다.

第43條(原本의閱覽) ① 囑託人, 그 承繼人 또는 證書의趣旨에 關하여法律上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證明한者는 證書의原本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27條第1項·第2項, 第30條와第31條第1項, 第2項의規定은 第1項에依하여公證人이 證書의原本을 閱覽시키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③ 公證人이 囑託人의 承繼人에게 證書의原本을 閱覽시킬 境遇에 承繼人임을 證明하는 證書를 提出케 하여야 한다.

④ 檢事는 언제든지公正證書의原本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44條(證書原簿) 公證人은 證書原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第45條(證書原簿記入事項) ① 證書原簿

원본이 滅失(滅失)된 경우 公證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연월일을 적고公證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인지의 첨부) 公證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公證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 公證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증서원부) 公證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① 증

에는 證書의作成時마다進行의順序에 따라다음事項을記入하여야한다.

1. 證書의番號와種類

2. 囑託人의住所와姓名, 法人인 때에는그名稱과事務所所在地

3. 作成의年月日

②第1項의規定은證書의作成을記入할帳簿에關하여法令에特別한規定이있는境遇에는이를適用하지아니한다.

第46條(正本의交付) ①囑託人또는그承繼人은證書의正本의交付를請求할수있다.

②第27條第1項·第2項, 第30條, 第31條第1項·第2項, 第43條第3項의規定은第1項에依하여公證人이證書의正本을作成할境遇에이를準用한다.

③第31條第2項의規定은囑託人의承繼人이證書의正本의交付를請求하는때에提出할證書에이를準用한다.

第47條(正本記載事項) ①證書의正本에는다음事項을記載하는公證人이이에署名捺印하여야한다.

1. 證書의全文

2. 正本인事實

3. 交付를申請한者의姓名

4. 作成의年月日과場所

②第1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證書의正本으로서의效力이없다.

第48條(抄錄正本) ①數個事件을列記하는證書또는數人各者에게關係를달리하는證書에關하여는有用한部分과證書의方式에關한記載를抄錄하여그正

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초록 정본)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本을作成할수있다.

②第1項의正本에는抄錄正本인事實을記載하여第47條第1項第2號의記載에대신하여야한다.

第49條(正本交付事實의記入) 公證人이證書의正本을交付할때에는그證書의原本 및 正本末尾에 囑託人 또는그承繼人 누구에게 正本을交付하였다는趣旨와그交付의年月日을記載하고이에署名捺印하여야한다.

第50條(謄本の交付) ①囑託人, 그承繼人 또는證書의趣旨에關하여法律上利害關係를가지고있음을證明한者는證書또는그附屬書類의謄本の交付를請求할수있다.

②第27條第1項·第2項, 第30條, 第31條第1項·第2項, 第43條第3項과第46條第3項의規定은第1項에依하여公證人이證書의謄本을作成할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51條(謄本記載事項) 證書의謄本에는다음事項을記載하고公證人이이에署名捺印하여야한다.

1. 證書의全文
2. 謄本인事實
3. 作成의年月日과場所

第52條(抄錄謄本) ①證書의謄本은그一部에關하여이를作成할수있다.

②第1項의謄本에는抄錄謄本인事實을記載하여야한다.

부분만을발췌하여그정본을작성할수있다.

② 제1항의정본에는증서의일부를발췌하여작성한초록(抄錄)정본이라는사실을적어야한다.

제49조(正本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증서의정본을발급할때에는그증서원본의끝부분에촉탁인이나그승계인 아무개에게정본을발급하였다는사실과그발급연월일을적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승계인 또는증서의취지에관하여법률상 이해관계가있음을증명한자는증서 또는그부속서류의등본발급을청구할수있다.

② 제1항에따라공증인이증서의등본을작성하는경우에는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준용한다.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등본에는공증인이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적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1. 증서의전문
2. 등본이라는사실
3. 작성연월일과장소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등본은증서의일부에관하여작성할수있다.

② 제1항의등본에는증서의일부를발췌하여작성한초록등본이라는사실을적어야한다.

第53條(附屬書類의 謄本) 第51條 및 第52條의 規定은 證書의 附屬書類의 謄本을 作成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54條(請求者의 謄本自作) ① 證書 또는 그 附屬書類의 謄本을 請求하는 者는 이에 記載할 事項을 스스로 記載하고 公證人의 署名捺印만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公證人이 第1項의 謄本에 署名捺印한 때에는 그 謄本은 公證人 自身이 作成한 것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第55條(正本, 謄本作成方法) ① 證書의 正本이나 謄本 또는 그 附屬書類의 謄本이 數枚에 이르는 境遇에는 公證人은 每紙面의 綴目에 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 第36條와 第37條의 規定은 證書의 正本과 謄本 또는 그 附屬書類의 謄本의 作成에 이를 準用한다.

第56條(遺言書, 拒絕證書作成의 特則) 第17條 第4項의 規定은 公證人이 遺言書를 作成하는 境遇에, 第27條乃至 第31條의 規定은 公證人이 拒絕證書를 作成할 境遇에 各各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6條의2(어음·手票의 公證등) ① 公證人은 어음·手票에 附着하여 強制執行을 認諾하는 취지를 기재한 公正證書를 작성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書는 어음·手票의 發行人과 受取人, 讓渡人과 讓受人 또는 그 代理人의 촉탁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5조(정본·등본의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公證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書를 작성하는 때에는 어음·手票의 原本에 附着하여서는 證書의 正本을 작성하고, 그 어음·手票의 寫本에 附着하여서는 證書의 原本과 謄本을 작성한 후, 그 正本은 어음·手票상의 債權者에게, 謄本은 어음·手票상의 債務者에게 각각 교부하며, 原本은 公證인이 보존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書는 民事집행법 제56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手票에 公證된 發行人과 背書人 및 公證된 換어음을 公證引受한 支給人에 대하여서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집행권원으로 보는 證書에 대한 執行文의 付與는 公證된 어음·手票의 受取人 또는 公證背書된 讓受人에 대하여만 이를 한다.

⑥第25條 내지 第38條, 第40條 내지 第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6條의3(執行文付與의 제한) ①公證인은 公正證書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執行文을 付與할 수 없다.

②公證인은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記가 있는 때에는 執行文을 付與할 수 없다.

第56條의4(債務名義인 公正證書의 正本등의 송달) ①民事집행법 제56조제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민사집행법」 제56

4호의 規定에 의한 債務名義인 證書의 正本이나 謄本 또는 그 證書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執行文과 證明書謄本の 송달은 郵便이나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第46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書의 正本 또는 謄本을 교부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證書의 正本 또는 謄本の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郵便에 의한 송달은 申請에 의하여 公證인이 행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를 準用한다.

第5章 私署證書의 認證

第57條(認證方法) ① 私署證書의 認證은 當事者로 하여금 公證人の 面前에서 私署證書에 署名 또는 捺印하게 하거나 私署證書의 署名 또는 捺印을 本人이나 그 代理人으로 하여금 確認하게 한 後 그事實을 證書에 記載함으로 施行한다.

② 私署證書의 謄本에 對한 認證은 私署證書와 對照하여 그와 符合함을 認定한 後 그事實을 記載함으로 施行한다.

③ 私署證書에 文字의 插入, 削除, 變改, 欄外記載 其他의 訂正이 있거나 破損其

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證書의 正本 또는 謄本이나 그 證書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證明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證書의 正本 또는 謄本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證書의 正本 또는 謄本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公證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準用한다.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公證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

他外見上顯著히疑心할만한事由가있을 때에는 그狀況을認證文에記載하여야한다.

<신 설>

<신 설>

정된 부분이 있거나 과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⑥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第58條(證書에의記載) 認證을賦與하여
야할證書에는登簿番號, 認證의年月日
과그場所를記載하고公證人과參與人
이署名捺印하고證書와認證簿와의사
이에間印을하여야한다.

第59條(準用規定) 第25條乃至第33條,
第36條, 第37條와第38條第5項의規
定은私署證書에認證을賦與하는境遇
에이를準用한다.

第60條(認證簿) 公證人은認證簿를작성
· 비치하여야한다.

第61條(認證簿記載事項) 認證簿에는認
證을賦與할때마다進行의順序에따라
다음事項을記入하여야한다.

1. 登簿番號
2. 囑託人의住所와姓名, 法人인 때에는
그名稱과事務所所在地
3. 私署證書의種類와署名捺印者
4. 認證의方法
5. 參與人의住所와姓名
6. 認證의年月日

第62條(定款認證取扱公證人) 商法第
292條와그準用規定에依한 定款의認
證에關한事務는會社本店의所在地를
管轄하는地方檢察廳의所屬公證人이
取扱한다.

第63條(定款認證의節次) ①第62條에
依하여定款의認證을囑託하려고할때
에는定款2通을提出하여야한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
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
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
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
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
여야 한다.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
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
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
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
을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
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
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
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삭 제>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
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定款의認證은囑託人으로하여금公證人의面前에서定款各通의署名또는記名捺印을自認케한後그事實을記載함으로써이를行한다.

③公證人은第2項의記載를한定款中1通을自身이保存하고他1通은囑託人에게還付하여야 한다.

④第57條第3項과第58條乃至第61條의規定은第2項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64條(附屬書類의連綴) ①代理權을證明하는證書,權限있는行政機關이 발한證明書,第3者의許諾이나同意를證明할證書其他의附屬書類는第63條第3項의規定에依하여公證人이保存하는定款에連綴하여야 한다.

②第40條第2項의規定은第1項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65條(保存定款滅失의境遇) ①第63條第3項의規定에依하여保存하는定款이滅失한때에는公證人은囑託人에게還付한定款에依하여謄本을作成하거나또는이미交付한定款의謄本을回收하여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의認可를받아滅失한定款에대신하여이를保存하여야 한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②第41條第2項의規定은第1項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66條(準用規定) 第43條와第50條乃至第55條의規定은公證人이保存하는定款과그附屬書類에이를準用한다.

第66條의2(法人議事錄의 認證)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하는公證人은 그 總會등의 決議節次와 내용이 眞實에 符合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은 公證人이 당해 法人의 議決場所에 참석하여 決議節次와 내용을 檢査하거나 당해 議決을 한 者중 그 議決에 필요한 定足數이상의 者 또는 그 代理人의 촉탁을 받아 그 囑託人으로부터 議事錄의 내용이 眞實에 符合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陳述을 듣고 囑託人으로 하여금 公證人의 앞에서 議事錄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④第57條第3項, 第58條 내지 第61條, 第63條第1項·第3項, 第64條 내지 第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事錄을 認證하는 경우에 이를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의2(법인 의사록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

準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6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

<신 설>

<신 설>

문서에 대한 인 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제2항

<신 설><신 설>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신 설>

<신 설>

第6章 代理兼務와引繼

第67條(公證職務代理의囑託) ①公證人 이疾病其他不得已한事由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同一檢察廳의管轄區域內의公證人에게代理를囑託할수있다.

②公證人이第1項에依하여代理를囑託하였을때에는遲滯없이그事由를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申告하여야한다. 代理를解免하였을때에도또한같다.

第68條(公證職務의代理命令) ①第67條第1項의境遇에公證人이 代理를囑託할수없을때에는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그管轄區域內의他公證人에게代理를命할 수 있다.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 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6장 대리, 검무 및 인계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②公證人이그職務를遂行할수있게된 때에는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第1項의代理를解免하여야한다.

第69條(代理公證人の事務所) ①公證人の代理者가第67條및第68條에依하여 그職務를遂行하는事務所는被代理公證人の事務所로한다.

②公證人の代理者가職務上署名할 때에는被代理公證人の職姓名, 所屬, 事務所所在地와 그代理者임을記載하여야 한다.

③第21條의規定은公證人の代理者에게이를適用한다.

第70條(事務所書類의封印) 公證人の死亡, 免職또는辭任으로因하여必要하다고認定할 때에는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그가指定한公務員으로하여금遲滯없이事務所의書類에封印케하여야한다.

第71條(兼務命令) ①公證人が死亡, 免職또는辭任한後即時後任者가任命되지아니한 때에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 그 管轄區域內의 公證人에게 兼務를 命할 수 있다.

②後任者가그職務를遂行할수있게된 때에는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第1項의兼務를解任하여야한다.

第72條(書類의接受) ①公證人が免職또는辭任한 때에는後任者 또는兼務者는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

前任者의 參與下에 遲滯없이 書類를 接受하여야 한다.

② 死亡其他의事由로因하여 書類를 授受할수없는 境遇에는 後任者 또는 兼務者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定하는 公務員의 參與下에 書類를 受繼하여야 한다.

③ 第70條에 依한 書類의 封印後에 任命된 後任者나 兼務者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定한 公務員의 參與下에 封印을 解除하고 書類를 受繼하여야 한다.

第73條(準用規定) 第72條의 規定은 兼務者가 書類를 再次 他公證人에게 引渡할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74條(兼務者, 後任者인事實의記載)

① 兼務者가 職務上署名하는 境遇에는 兼務者임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前任者나 兼務者가 作成한 證書에 依하여 後任者가 그 正本이나 謄本을 作成하여 署名할 때에는 後任者임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75條(書類引繼命令) ① 公證人이 死亡, 免職 또는 辭任한 境遇에 定員의改正으로因하여 後任者가 必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公證人이 所屬한 地方檢察廳의 管轄區域內의 他公證人에게 書類의 引繼를 命하여야 한다.

② 第72條와 第7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에 依하여 書類의 引繼를 命令받은 公

자는 前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前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證人に게이를準用한다.

第76條(停職) ①第70條, 第71條, 第72條第3項, 第74條第1項의規定은公證人의停職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②第1項의境遇에兼務者의事務所는停職者의事務所로한다.

第77條(準用規定) 第72條와第73條의規定은地方檢察廳檢事또는地方法院登記所長이第8條에依하여公證人의職務를遂行하는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6章의2 公證協會

第77條의2(公證協會의 目的등) ①公證業務의 개선과 統一을 도모하고, 公證業務의 指導와 連絡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며, 公證業務 擔當者의 品位를 보전하기 위하여 公證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公證人・公證認可合同法律事務所 또는 公證認可法務法人은 公證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③公證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公證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을 정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公證協會의 會則・任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公證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6(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신 설>

<신 설>

第7章 監督과 懲戒

第78條(監督機關) 公證人은法務部長官
이이를監督한다.

第79條(監督權의 내용) 第78條의 監督
權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다.

1. 公證人이 부적당하게 취급한 職務
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적
정하게 職務를 취급하도록 指示하
는 것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
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
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
증인협회가 정한다.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
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
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
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
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
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
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公證人の地位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警告하는 것. 이 경우 警告하기 전에 그 公證人에게 辨明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80條(書類의檢閱) 法務部長官은年1回以上그所屬職員으로하여금公證人이保存하는書類를檢閲케할수있다.

第81條(異議의申請) ①囑託人또는利害關係人은公證人の事務取扱에關하여그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異議를申請할수있다.

②第1項의異議에對한處分에關하여는 다시法務部長官에게異議를申請할수있다.

③第1項및第2項의異議가있을 때에는本章에規定된監督權에 依하여處理한다.

第82條(懲戒事由및報告) ①公證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懲戒에 回附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職務上の義務에 違反하거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신 설>

②各地方檢察廳檢事長은그管轄區域內的公證人에關하여懲戒에該當하는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事由가 있다고認定하는 때에는即時이
를法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한다.

<신 설>

第83條(懲戒의種類) 懲戒는다음의5種
으로한다.

1. 譴責
2. 100萬원 以下의過怠料
3. 1年 以下의停職
4. 삭 제
5. 免職

第84條(懲戒機關) ①第83條第2號 乃
至第5號의懲戒는懲戒委員會의議決에
依하여法務部長官이行한다.

②第83條第1號의懲戒는法務部長官
이行한다.

<신 설>

第85條(懲戒委員會) ①法務部에懲戒委
員會를둔다.

②懲戒委員會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定한다.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
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
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견책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정직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
취소)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
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위원회
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
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
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 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신 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의2(징계협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협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협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협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협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신 설>

<신 설>

<신 설>

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협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협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협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 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

<신 설>

<신 설>

第86條(職務停止) ①公證人이拘束되거나 또는拘留의刑을받은 때에는釋放될 때까지그職務가停止된다.

②第84條第1項의規定에依한懲戒節次가開始된 때에는그終了時까지公證人の職務를停止시킬 수 있다.

<신 설>

③公證人の停職에關한規定은그職務停止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신 설>

에 充當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 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신 설><신 설>

第87條(過怠料의執行) ①過怠料를完納하지아니하는때에는檢事의命令으로써이를執行한다.

②第1項의執行에關하여는非訟事件節次法 第249條의規定을準用한다.

③公證人이納付한身元保證金은第19條第3項의境遇를除外하고는他公課와債權에優先하여이를過怠料에充當한다.

第88條(罰則) ①公證人,辯護士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하여設立된法務法人의構成員이나構成員이 아닌所屬辯護士 또는同法 第48條의2의規定에 의하여設立된公證認可合同法律事務所의構成員이 第66條의2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②第1項의規定중法務法人의 경우에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기간에 포함한다.

제8장 벌칙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 제2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務
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신 설>

제89조(양벌 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
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
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
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제4
항 및 제15조의4제3항·제4항의 개
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
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
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
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

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務法人과 公證認可 合同法律事務所의 당해 業務執行辯護士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국회 계류 법률

公證人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564
----------	------

제출연월일 : 2008. 10. 21.
제 출 자 : 정 부

개정안 제안이유

법인 등기를 할 때 일률적으로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회사가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公證人法 일부개정법률안

公證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66條의2(法人議事錄의 認證) ① 法人의 登記를 할 때에 그 申請書類에 첨부되는 法人의 總會등의 議事錄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6條의2(法人議事錄의 認證)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공증 부분 발췌

의안 번호	1566
----------	------

제출연월일 : 2008. 10. 2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전략>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공증을 면제하고 감사 선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신속하고 저렴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전략>

- 다.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안 제292조)
- (1)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 시에 첨부하는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음.
 -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

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공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후략>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발췌)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략>

제2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제3항, 제329조, 제4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42조의2

* • 법사위 회부: 2008년 10월 22일

• 법사위 상황: 2008년 11월 28일 법사위 제1소위 상정되어 제안설명된 상태(2009년 1월 10일 현재)

부터 제542조의12까지, 제546조, 제624조의2, 제634조의3, 제635조제1항제21호·제30호 및 제635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6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후략>

신·구조문대비표(발췌)

현행	개정안
第292條(定款의 認證) 定款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음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